「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6. 10. 06.)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0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6. 10. 16)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대중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사 업 명 :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內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
- 사업기간 : 2026. 10. ~ 2027. 1.
- 사 업 량 : 부지면적 A=468㎡(충전시설 43, 전용주차구역 425)
- 사업내용 : 충전시설 28대(급속 7, 완속 21) / 전용주차구역 34면
- 소요예산 : “해당없음”(민간충전사업자 부담)
- 추진방법 :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 사 업 자 : 별도 선정

3. 향후 추진 계획

- ❍ 2026. 9. :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 2026. 11. : 사업자 선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 ❍ 2027. 1. : 충전시설 설치
- ❍ 2027. 3. : 공영차고지 준공 및 시설 운영

4. 제안근거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지방의회 동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 본 동의안은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에 위치한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468㎡의 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8대와 전용주차구역 34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충전시설의 설치비용은 민간 충전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별도로 선정하고, 시는 공유재산인 공영차고지 부지를 사용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 종료 시 설치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 11월 사업자 선정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거쳐 2027년 1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027년 3월 공영차고지 준공과 함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임.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7. 토론의 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